

주요국 Small Banking 인가 제도 비교

정 희 수 연구위원(heesoo_jung@hanafn.com)

핀테크 기업의 은행 관련 서비스 제공이 활발해짐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기존 규제 테두리 내 새로운 형태의 “Small Banking Licence”를 신설하였다. 기본적으로 업무범위에 따라 최소자본금 및 건전성 규제가 완화되지만 기존 은행에 비해 업무범위의 제한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. 따라서 국내에서 새로운 인가 제도를 도입할 때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규제 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핀테크 은행의 독자생존 가능성,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.

■ 금융위는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

- 특정 영역에 한정된 업무만 수행하는 핀테크 기업이 은행법 테두리에서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'Small Fin-tech Licence' 도입을 본격화
 - 현재 핀테크 기업은 대부분 금융사업자가 아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,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을 통해 한시적인 업무 영위 또는 업무 위탁 형태로 운영
- 특히, 금융위기 이후 기존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영국, EU 등을 중심으로 'Small Banking Licence' 제도가 빠르게 확산된 점도 고려
 -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존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업무 영역이 모호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 인가 단위를 은행법 내에 신설하거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
- 따라서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'Small Banking Licence' 관련 규제를 살펴본 후 국내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

■ 2013년 영국을 시작으로 EU, 스위스, 호주, 미국 등에서 'Small Banking Licence' 제도를 도입하여 핀테크 기업의 은행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

- 2013년 3월 영국에서 "A review of requirements for firms entering into or expanding in the banking sector"를 통해 시작한 후 'New Bank Start-up Unit'을 신설('16.1)하였으며, ECB도 'Fin-tech Credit Institution Licence'를 도입('17.9)
- 2016년 11월 논의를 시작한 스위스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'Light Banking Licence'('19.1)를 도입하고 호주도 'Restricted ADI Framework'를 신설('18.5)
- 미국도 2016년 12월에 논의를 시작해서 특수목적은행(Special Purpose National Bank Charters, SPNB) 형태의 설립을 허용('18.7)

■ (영국) 핀테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SSB(Small Specialist Bank) 인가 단위 신설

- 영국에서 정상적인 인가 신청과 승인 과정의 중간에 Mobilisation(옵션 B) 단계를 두고 업무제약이 있는 SSB(최소자본금 500만 파운드 이하) 인가 단위를 신설
 - Mobilisation 단계는 은행업 인가를 받은 상태이지만 업무범위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풀뱅크 은행업 인가 前 단계로 12개월 동안 임시적으로 적용
- 최소자본금은 100만 유로(파운드)와 완충자본(Capital Planning Buffer)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기존 은행의 500만 유로에 비해 1/5 수준으로 낮은 편
- 업무범위는 당좌예금 및 저축성 예금, SMEs대출, 모기지 등의 업무 중에서 최소 1개 업무를 포함해야 하며 업무 요건 미충족 시 SSB에서 제외
- Mobilisation 단계에서 요구되는 지배구조, 리스크관리, IT 인프라 등의 규제는 기존 은행과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아웃소싱에 대한 역량 집중을 강조

■ (EU) 핀테크 은행은 기존 은행 대비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고 인가 심사 기간을 단축

- 핀테크 은행은 EU의 단일감독메커니즘(Single Supervisory Mechanism, SSM)을 적용받고, 지배구조 및 주주 적합성 등은 기존 은행과 동일한 규제 적용
 - EU 내 모든 은행은 해당 국가의 감독당국에서 신청하고 ECB에서 최종 승인
- 핀테크 은행의 최소자본금은 100만 유로이고 인가심사 기간은 6~12개월 소요되며 업무는 기존 은행과 동일하지만 투자서비스, 청산, 연기금관리, 투자자문은 제외
 - 기존 은행의 최소자본금은 500만 유로이고 인가 심사 기간은 9~14개월 소요
- 핀테크 은행은 아웃소싱 분야에 대해 명확한 점검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최초 3년 동안 예상 손실을 정확하게 예측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음

■ 국가별 Small Banking Licence의 주요 내용 비교

	영국	EU	스위스	호주	미국
인가 명칭	Small Specialist Bank	Fin-tech Credit Institution	Light Banking Licence	Restricted ADI Licence	Fin-tech Bank National Charter
최소자본금 (기존은행 기준)	100만 유로(파운드) (500만 유로)	100만 유로 (500만 유로)	유치예금의 3% 최소 30만 CHF (1천만 CHF)	300만 AUD + RR 100만 AUD (5천만 AUD)	업무 규모, Biz 모델에 따라 차등화
적용기간	12개월	-	-	24개월	-
업무범위	예금, SMEs 대출, 모기지 중 최소1개 포함	제약 없음 (기존은행과 동일)	제약 없음 (기존 은행과 동일)	복잡하거나 시장 위험이 높은 상품, 투기적 업무 제외	수표 지급, 대출 (예금 제외)
예금한도	5만 파운드	-	1억 CHF	200만 AUD (계좌당 25만 AUD)	-
기타 규제	·기존 은행과 유사	·기존 은행과 유사 ·SSM 적용 ·출구전략 강화	·자본적정성/유동성 규제 제외 ·은행 명칭 사용불가 ·결제시스템 허용	·건전성 규제 완화 ·은행 명칭 사용불가 ·출구전략 강화	·기존 은행과 유사 ·금융포용/지역재투자 법(CRA) 적용 ·출구전략 강화

자료 : PRA, FCA, ECB, FINMA, APRA, OCC

■ (스위스) '19년 1월부터 은행법 개정을 통해 핀테크 은행의 인가 단위를 신설

- 스위스는 Full Banking Licence와 Light Banking Licence(핀테크 은행)로 구분하고 규제 샌드박스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3가지 법적 형태로 분류¹¹
 - 핀테크 기업의 업무 영역이 은행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의 금융요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둠
- 핀테크 은행의 최소자본금은 유치예금의 3% 수준이지만 최소 30만 CHF를 보유해야 하나, 기존 은행의 1천만 CHF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
- 예금은 1억 CHF까지 유치할 수 있지만 이자 지급이나 투자(운용)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계정으로 보관해야 함
 - 규제 샌드박스는 100만 CHF 이하 예금 유치를 허용하지만 예대마진 업무는 불가
-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규제는 적용받지 않으나 ‘은행(Bank)’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예금자보호 대상에서도 제외
 - 다만, 기밀유지 의무, AML/KYC 등에 관한 의무는 기존 은행과 동일한 수준
- 한편, 리스크관리와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아웃소싱을 허용하고 은행 간 결제시스템과 지로 계좌에 대한 접근을 허용

■ (호주) 업무 규모가 제한된 'Restricted ADI Licence'를 신설하여 은행업 전환을 유도


- 호주의 은행업 인가단위는 Direct ADI Licence와 Restricted ADI Licence로 구분되며 Restricted ADI Licence의 유효기간은 24개월로 규정
 - 24개월 내에 요건 미충족 시 업무가 중단되는데, 이는 Direct ADI Licence를 부여받을 만한 사업자를 선별하여 빠른 시일 내 은행 전환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반영
- 최소자본금은 300만 AUD 및 Resolution Reserve(=100만 AUD)의 금액과 조정 총자산의 20% 중 크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
 - 기존 은행의 최소자본금인 5천만 AUD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
- 총예금 규모는 200만 AUD(계좌당 25만 AUD 이내)로 제한되고 총자산도 1억 AUD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
- 업무범위는 복잡한 상품, 시장 위험이 큰 사업, 부동산 개발 관련 투기적 사업 등을 제외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제한된 업무를 영위한다는 내용 공시를 의무화
 - 총자산 제한 및 위험한 사업 배제 등으로 건전성 기준은 기존 은행에 비해 완화

¹¹ 2016년 11월 스위스 의회는 제3사업자의 결제계좌 보유기간(최대 60일) 확대, 규제 샌드박스 도입, 핀테크 은행 도입 등 3가지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발표함

■ (미국)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영업이 가능한 특수목적은행(SPNB) 인가를 허용^[2]

- 美 OCC는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면서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기존 은행과 동일한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규제 수준도 동일하게 적용
 - 정책 관점에서 보면 핀테크 기업에 Fed 시스템의 결제계좌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 감독 범위 내에 포함시켜 직접 통제하려는 의도를 포함
- 최소자본금은 오프밸런스(off-balance sheet) 업무 규모, 업무의 복잡성, 비즈니스 모델 관련 리스크 정도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계획
- 업무범위는 예금을 제외한 대출, 전자지급결제를 포함한 수표 지급 업무만 허용하고 유동성 규제는 업무 범위, 리스크 정도 등에 비례하여 결정
 - 美 OCC는 예금, 수표 지급, 대출 등을 핵심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핀테크 은행이 예금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Full Service National Bank Charters 인가 필요
- 핀테크 기업은 금융포용과 지역재투자법(CRA)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위기에 대비한 비상계획(contingency plan)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
- 예금 업무를 포함한 총자산 100억 달러 이하 특수목적은행(SPNB)은 OCC에서, 예금 업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금융보호국(CFPB)에서 감독

■ 주요국 사례에서 보듯 핀테크 은행 도입 시 효율성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

- 은행업 인가 단위 세분화는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 - 핀테크 은행의 설립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존 은행과 다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보완적 기능이 강조되어야 함
- 운영방식에 있어 풀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의 한 단계로 인식(영국·호주)하거나 은행법 내에 별도의 조항을 신설(스위스)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
 - 은행업 인가 단위 세분화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핀테크 기업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
- 업무범위에 따라 최소자본금 규제를 차등화하고 건전성 및 유동성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나, 업무 제한에 따른 수익구조의 한계 극복은 과제로 남음
 - 또한, 핀테크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 형성과 지속 가능성도 고려
- 끝으로 핀테크 은행의 증가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심사 기능을 강화하면서 출구전략 등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도 중요 

[2] 기존에 미국의 특수목적은행(SPNB)은 Trust Bank, Cash Management Bank, Credit Card Bank 등 3가지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이번에 Fin-tech Bank가 추가됨